

파인만 1 억만들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

효력발생일: 2022 년 9 월 20 일

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 변경

1. 기재 정정 사유:
 - 1) 연금클래스 신설
 - 2) 투자대상자산 한도 변경
 - 3) 법개정 반영
 - 4) 집합투자업자 최근 2 개 사업년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연금클래스 추가	<u><신 설></u>	-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 개인연금형(C-p)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 개인연금형(C-pe) -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 퇴직연금형(C-rp)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 퇴직연금형(C-rpe)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 개인연금형(S-p)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 퇴직연금형(S-rp)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연금클래스 추가	<u><신 설></u>	-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 개인연금형(C-p)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 개인연금형(C-pe) -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 퇴직연금형(C-rp)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 퇴직연금형(C-rpe)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<p>하며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⑤ 집합투자증권 등 <u>5%</u> 이하</p> <p>⑤-2 ①, ⑤에의 투자 및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합계액 ①의 주식 투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</p> <p>⑧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<신 설></p>	<p>하며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「<u>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</u>」 제 59 조에 따른 <u>단기사채등(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- 이상)</u>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 <추가></p> <p>⑤ 집합투자증권 등 <u>40%</u> 이하 <변 경></p> <p>⑤-2 ①, ⑤에의 투자</p> <p><u>주식과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는 ①의 주식 투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<변 경></u></p> <p>⑧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<u>10%이하</u>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나. 환매 (3) 환매수수료</p>	<p>연금클래스 추가</p>	<p><신 설></p>	<p>-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형(C-p)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형(C-pe) -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형(C-rp)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-rpe)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(S-rp)</p>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<신 설>	- 종류 C-p, C-pe, C-rp, C-rpe, S-p, S-rp : 없음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<신 설>	-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형(C-p)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형(C-pe) -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형(C-rp)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-rpe)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(S-rp)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나. 최근 2개 사업년도 요약 재무내용		-기준일 : 2021.03.31	-기준일 : 2021.12.31 <업데이트>
'21,10.21' 자통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	용어 변경	- 대차대조표	- 재무상태표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간이투자설명서 전반	연금클래스 추가	<신 설>	-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형(C-p)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형(C-pe) -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형(C-rp)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형(C-rpe) 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	-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 퇴직연금형(S-rp)